

OSG-KOREA	관 리 표 준	분류번호	KOS-A-1530	
		제정일자	2005년 09월 22일	
		개정일자	2021년 07월 29일	
녹 색 경 영	녹색경영 관리 규정	개정번호	3	1 / 4

1. 적용범위

이 규정은 기업활동 및 시설 운영 관리상의 활동, 복리시설 등에서 발생되어 직·간접적으로 녹색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목 적

이 규정은 당사의 기업활동 및 서비스가 대기, 수질, 토양환경, 소음·진동, 폐기물, 에너지, 온실가스 등에 미치는 직·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3. 책임과 권한

3.1 녹색경영부서장

- (1) 해당 부서의 녹색경영 보전에 대한 기술적, 행정적 지원
- (2) 해당 부서에 녹색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발생시 녹색경영 측면 평가 실시 요구
- (3) 인·허가 신고업무
- (4) 위탁처리 업체의 선정 및 관리
- (5) 비상사태시 대책수립 및 추진
- (6) 주기적 환경오염도 측정 및 측정기록부 기록 및 보존
- (7) 관련 기관이 지시하는 상황 보고 및 관리

3.2 해당 부서장

- (1) 에너지 및 온실가스,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공정의 개선 및 합리화
- (2) 부서내 녹색경영 보전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보고
- (3) 부서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및 감독
- (4) 부서내 배출시설,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
- (5) 부서내 운영시설의 변경에 따른 녹색경영 측면 평가 실시
- (6)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민원발생 및 규제시 해당 설비점검 및 답변

관 련 규 정	녹색경영 측면 평가 규정 (KOS-A-1510)	주관부서	인사지원실	
	대기관리 세척 (KOS-A-1530-01)	작 성	검 토	승 인
	수질관리 세척 (KOS-A-1530-02)	이봉택	신영훈	
토양관리 세척 (KOS-A-1530-03)				
소음·진동 관리 세척 (KOS-A-1530-04)				
폐기물 관리 세척 (KOS-A-1530-05)				
에너지관리 세척 (KOS-A-1110-06)				
비상사태 관리 규정 (KOS-A-1560)				

OSG-KOREA	관 리 표 준	분류번호	KOS-A-1530	
		제정일자	2005년 09월 22일	
		개정일자	2021년 07월 29일	
녹 색 경 영	녹색경영 관리 규정	개정번호	3	2 4

3.3 환경관리인

- (1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시설 유지관리
- (2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작성 및 보존
- (3)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대장 및 관련대장 기록 및 보존
- (4) 폐기물의 분리·보관·처리 및 관리

4. 업무절차 및 방법

4.1 녹색경영관리 대상시설 종류

No.	구 분	시 설 종 류	비 고
1	대 기	1)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	
2	수 질	1)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	
3	토 양	1) 토양오염 유발시설 2) 토양오염 방지시설	
4	소 음·진 동	1) 소음·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	
5	폐 기 물	1) 관리대상 폐기물 및 분류	
6	에 너 지 (온실가스)	1) 에너지 사용 및 지원시설 2)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시설	

4.2 관리절차

4.2.1 대기관리

대기관리는 대기관리 세칙 (KOS-A-1530-01)에 따른다.

4.2.2 수질관리

수질관리는 수질관리 세칙 (KOS-A-1530-02)에 따른다.

4.2.3 토양관리

토양관리는 토양관리 세칙 (KOS-A-1530-03)에 따른다.

4.2.4 소음·진동관리

소음·진동관리는 소음·진동관리 세칙 (KOS-A-1530-04)에 따른다.

4.2.5 폐기물관리

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 세칙 (KOS-A-1530-05)에 따른다.

4.2.6 에너지(온실가스)관리

에너지관리는 에너지관리 세칙 (KOS-A-1110-06)에 따른다.

OSG-KOREA	관 리 표 준	분류번호	KOS-A-1530	
		제정일자	2005년 09월 22일	
		개정일자	2021년 07월 29일	
녹 색 경 영	녹색경영 관리 규정	개정번호	3	3 4

4.3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

- (1) 녹색경영부서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제반관리를 위해 적합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 법규에 규정된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시켜야 한다.
- (2) 환경관리인이 퇴직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색경영부서장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재선임하여야 한다.

【부 칙】

① [시행일]

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[관리절차]

이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의 절차는 회사표준 관리 규정(KOS-A-0330)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.

OSG-KOREA	관 리 표 준	분류번호	KOS-A-1530	
		제정일자	2005년 09월 22일	
		개정일자	2021년 07월 29일	
녹 색 경 영	녹색경영 관리 규정	개정번호	3	4 4

[별첨 1] 녹색경영관리 체계도

